

# 인재개발교육연구소 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구소는 강원관광대학 부설 인재개발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 본 연구소는 강원관광대학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연구소는 대학이 가진 학문적 연구능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HRD(인적자원개발)의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과 국가를 위해 전문화된 글로벌 인재를 육성, 조직, 직무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급속한 과학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과학화가 추진됨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감과 동시에 대학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인재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구
2. 전문 자격을 위한 직무 교육 및 연구
3. 지역 인적 자원의 육성과 조직 및 직무 분석을 통한 향토 대학의 역할 재인식

제 4 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인재 개발에 대한 교육과 경영에 대한 연구
2.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자격 인증 교육 및 직무 전문화
3. 지역 전문가의 육성과 지역대학으로의 역할 연구
4. 유치원, 초, 중등 교원의 직무 보수 교육 및 연구
5. 보건교사 및 지역 의료 전문가의 직무 보수 교육 및 연구
6. 지역 사회 복지 연구 및 실천 과제 수행
7. e-city를 통한 e-태백의 발전과제 및 실천, 경영 연구
8. 관련 분야의 전문 교육원 설립 운영
9.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자료의 간행,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10.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

제 5 조 (운영의 독립성) 연구소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써 독립운영 체제를 갖춘다.

## 제 2 장 조직

제 6 조 (임원) 본 연구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1 명
2. 연구위원 약간 명
3. 연구원 약간 명
4. 연구보조원 약간 명
5. 자문위원 약간 명
6. 조교 약간 명
7. 간사 약간 명

제 7 조 (자격·임무) ① 연구소장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9.12.29)

2.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전반업무를 통괄한다.

② 연구위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과 부합하는 전공을 가진 본 대학 전임교수 중에서 연구소장이 추천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2. 연구위원은 임기를 두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해촉 할 수 있으며 연구위원이 본 대학을 퇴직한 때는 당연히 해촉 된 것으로 본다.
3. 연구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 연구위원의 자격으로 외부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
4.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 연구심의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한다.

③ 연구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은 본 대학 출강 교수 또는 해당 분야의 상당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연구위원이 추천하며 연구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고,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 연구원의 자격으로 외부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다.

④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와 업무진행을 위해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⑤ 자문위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수행 상 필요한 때에는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연

구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⑥ 조교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교는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학과조교는 연구소 조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조교는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제반업무를 보조한다.

제 8 조 (연구원, 연구보조원, 간사, 조교 등의 채용) ① 연구소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연구보조원, 간사,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채용되는 연구원, 연구보조원, 간사, 조교 등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연구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9 조 (연구심의운영위원회) ① 연구심의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연구심의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방침, 사업계획 수립, 예산 및 결산, 연구 결과의 평가,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③ 연구심의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한다.

④ 연구심의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3 장 연구과제 및 배정

제 10 조 (종류 및 배정)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내부과제 : 연구비가 학장에 의해 지급되며, 연구수행자를 학장이 결정하여야 할 과제
2. 외부과제 : 연구비를 외부 기관에서 지급되며, 연구수행자를 연구비 지급 기관에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학장을 경유하여 지급되어야 할 과제
3. 자체과제 : 연구비를 본 연구소에서 지급되며, 연구수행자를 본 연구위원 및 연구원으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연구소장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과제
4. 교육 운영 과제 : 본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실시 운영되는 교육 운영에 의해 교육연구비를 본 연구소가 지급되며, 연구수행자를 본 연구위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으로 지정한 과제로서 연구비가 연구소장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과제

제 11 조 (과제배정절차) ① 내부과제와 외부과제는 연구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이를 배정한다.

② 자체과제와 교육 운영과제는 연구심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배정한다.

## 제 4 장 재정

제 12 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연구용역비,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세입금과 대학보조금으로 한다.

2. 자체세입은 수학연구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입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 자체세입에는 연구소 부설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입금을 포함 한다.

4. 강원관광대학 연구 보조금을 재정 수입으로 한다.

5. 이 규정 이외의 연구비 운영에 관하여는 연구심의운영위원회에서 연구비 관리 시행 규칙을 따로 정해 시행 한다.

제 13 조 (회계) 연구소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포함되며,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09.12.29)

제 14 조 (감사) ① 연구소에는 대학 외부에서 감사 1인을 위촉한다.

② 감사는 연구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한다.

③ 감사는 연 1회 회계연도 말 정기 감사와 비 정기 감사를 통한 감사 보고를 연구심의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구심의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연구심의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 15 조 (결산보고) 연구소의 소장은 매 분기 말에 회계 결산을 산학협력단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 한다.

## 제 5 장 부속시설의 조직

제 16 조 (부속시설) 연구소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부설 교육원을 설립 할 수 있다.

1. 본 연구소의 목적에 따라 전문 자격증 발급에 따른 제 법령에 의해 부설 교육원을 설립 운영한다.

2. 부설 교육원의 운영 세칙은 연구심의운영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7 조 (교육 운영) 연구소는 설립 목적에 따라 전문 영역 또는 그에 부합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교육 운영 프로그램의 운영 세칙은 연구심의운영위원회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18 조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시행세칙은 연구심의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